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 엄태영·이종배·조경태

박충권 • 서천호 • 강대식

권성동 • 주진우 • 김상훈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만을 전문성과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청년처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청년처) ①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둔다.

② 청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청년처장이 각각 승계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 2.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 6.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 7.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 8.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되 사무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71471/87	또는 청년처			
7 O H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또			
교육부	는 청년처			
고하기스거 H 톤 시 H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신부 또는 청년처			
ㅁ쉵케ㅇ쾨쾨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			
문화체육관광부	광부 또는 청년처			
누리초차차프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			
농림축산식품부	품부 또는 청년처			
701 5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또는 청년처			
서 시 기 준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또는 청년처			
ユニコモH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또는 청년처			
조 / 베리카이H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			
중소벤처기업부	업부 또는 청년처			
L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청년처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총리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청년처장의 행위 또는 청년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년처, 청년처장 또는 청년처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 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인 안제출) ①-----사혁신처장 • 법제처장 • 식품의 -----식품의약품 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안전처장·청년처장-----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청년처) ① 청년정책의 <신 설> 수립·총괄·조정, 청년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 년처를 둔다. ② 청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 다.